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49호
----------	------

제출연월일 2005. 8. 22.
제 출 자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인정시장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12조)
- 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제23조)
- 다.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내지 제33조)
- 라. 시장상인회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내지 제43조)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05. 7. 20 ~ 2005. 8. 9)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래시장을 말한다.
2. “점포”라 함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용역을 영위하거나 물건 또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일정한 면적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 경우 이를 점포로 본다
3.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에게 그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을 말한다.
4. “인정시장의 구역(이하 “시장구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50개 이상의 점포(공설시장의 경우 점포 또는 구획으로 한다)가 소재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 가.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곳
 - 나.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로서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

천제곱미터이상인 곳

- 다. 시장(市長)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설시장으로 개설(신축 또는 증축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곳으로서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곳
5. “편의시설”이라 함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 화장실, 비·햇빛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관광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6. “주요시설물”이라 함은 편의시설중 상인과 이용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 또는 공공시설로서 주차장,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비·햇빛가리개, 고객센터, 전기·소방·가스 등 안전시설, 상가건물, 물류시설(통합콜센터, 공동창고 및 작업장) 등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에 의한 사업으로 시장(市場)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가.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설치·개량·보수·수선·확장·구조의 변경 등을 말한다)
- 나. 영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환경개선사업
- 다. 영 제6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공설시장현대화사업
8.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시장(市長)
-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시장(市長)으로부터 보조금을 이전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상인회 대표자를 말한다)
- 다. 종전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장(市長)이 보조금을 이전하여 사업을 집행한 바 있는 「민법」·「상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단·재단법인·조합(이하 “시장법인”이

- 라 한다) 또는 사업을 위탁한 번영회 대표자
9. “시장(市場)”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市場)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공설시장을 말한다.
 10. “시장상인(이하 “상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市場)의 부지 또는 건물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市場)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2. “토지 등”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 모두를 말한다.
 13. “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市場)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14.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법 제18조제2항 및 제30조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소유자·조합·시장(市長)·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등을 말한다.
 15. “집합건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16. “추천 신청자”라 함은 영 제10조제2항 각 호에 의한 개인 또는 위원회·조합·법인 등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2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제3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시장구역은 제2조제4호의 각목 및 영 제3조 제1항·제3항의 요건에 적합한 곳으로서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2m이상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12m미만의 양방통행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의 경우 어느 누구라도 전체 점포 수 또는 연건축면적의 50퍼센트이상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설물중 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근의 50m이내에 있는 일단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구역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의 산정은 제4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산정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정시장의 신청자격) 영 제3조제2항 및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등록한 상인회장
2.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장
3. 기타 상인 또는 점포소유자 등을 회원으로 설립된 시장관리 법인·조합 등 단체 대표자

제5조(인정의 철회) ①시장(市長)은 재래시장으로 인정한 시장(市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경우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에 미달된 때
2. 인정시장의 관리자가 6월이상 장기적 공석 등으로 시장(市長)이 관

리자의 교체와 재선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는 자가 없을 때 또는 시장(市長)의 관리자 지정을 수락하지 않아 자체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市長)이 시장(市場)의 인정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시장의 관리·운영) ①인정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자가 관리자가 되며 인정시장을 관리한다. 다만, 공설시장과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시장에 대한 시설물의 사후관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시장(市長)은 인정시장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장기적 공식 등으로 인정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인회 등에 시장(市場)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정시장 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구역 및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
2. 시장(市場)안의 청결 유지 및 깨끗한 환경보존
3.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4. 입점상인과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편의증진 및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6. 시장(市場)의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의 추진
7. 관계법령 준수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市長)의 지시사항 이행 등

제8조(인정시장 변경 및 관리자의 교체 등) ①관리자는 제2조제4호에 의한 시장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시장(市場)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자를 교체하고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시장 관리자로 선정된 경우
2. 관리자가 제7조의 업무를 태만히 하여 6회이상 지속적인 민원을 받

생시킨 경우

3. 장기적 공석으로 시장(市長)의 정상적인 운영·관리가 곤란한 때

4. 기타 관리자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③시장(市長)이 2회이상 관리자의 교체를 권고하였음에도 상인회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市長)은 상인회 임원중에서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상인회는 제3항에 의하여 시장(市長)이 임시로 관리자를 지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정하고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市長)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시설물 및 편의시설 관리) ①관리자는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편의시설” 및 “주요시설물”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 등의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관리 비용의 징수 등) 관리자는 인정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11조(보고 등) ①시장(市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리자에게 시장(市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의 규모, 업종별 점포수, 소유형태, 회원수, 종사자수,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의 변동사항
2. 공부상 주소 및 전화번호·상호가 기재된 시장구역내 상인 명부
3. 시장(市場) 전체매출액, 점포당 평균매출액, 임대료, 공점포 발생현황, 1일평균 이용객

제12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제5호에 의한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햇빛가리개 : 내구년수 10년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련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점포 300개당 1개소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市場)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폭 3미터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기타시설 : 소방·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 이용객 안전시설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쇼핑카트 및 휴게시설 등 적정수의 편의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제1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제2조제8호가목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市場)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시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비·햇빛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구역 안과 밖에서 시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3. 종전법(2005년 3월 1일 이전까지를 말한다)에 의하여 무등록시장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

②제2조제8호나목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市長)과 협약으로 정한다.

③제2조제8호다목에 의한 시장법인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법인 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안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비·햇빛가리개, 도로,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쇼핑카트, 교육시설(다만, 개별점포안의 시설물은 제외한다)
2. 시장법인 소유의 시장부지 또는 건축물 밖에서 종전법에 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공동이용 시설물로서 주차장, 화장실, 고객센터, 통합콜센터 등 물류시설, 교육 및 행사공간 등
3. 제2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시장(市長)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설물의 관리) ①시장(市長)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상인회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시장법인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市長)은 제2항에 의한 관리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처분제한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각 관리주체는 분야별 적정한 규모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관리) ①시장(市長)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市場)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주차장 조례」·「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물의 관리자 신고) 제14조제2항에 의한 상인회 및 시장법인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시장(市長)에게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市場)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

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수탁자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③제14조제2항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市長)과 협약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 ①시장(市長)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관리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市長)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1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중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에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변상의 책임 등) ①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상인회 및 시장법인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제24조(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 영 제9조제1호라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市場)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시장(市長)이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에 정비사업 시행대상으로 반영한 지역

나. 공점포의 비율이 50퍼센트이상으로 정상적인 재래시장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지역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경

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이상인 지역

제25조(사업시행구역 선정 추천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市長)은 신청인이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하여 사전시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시장(市長)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법 제28조 및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市長)이 인접지역을 사업시행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범위는 당초의 시장부지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의 50퍼센트이상의 면적을 초과하여 편입할 수 없다.

제27조(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①영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8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정비사업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제29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비사업조합 인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조합 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 등의 소유자의 정비사업조합 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3인이상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

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층, 지상층, 판매시설 면적, 주거시설 면적, 업무시설 면적, 기타시설 면적),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면적, 용역업 매장 면적, 공동사용시설 면적)

④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다른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1조(정비사업의 자금지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경우 시장(市長)은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용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추천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32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받은 경우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중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되, 시장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시장(市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市長)에게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 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市長)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市場)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 점포(시장(市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상인회 등록 및 운영관리

제34조(기능) 상인회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市場)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의 수행(다만, 시장(市長)이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상인회의 자산 및 전문 인력이 미흡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 제35조(상인회의 설립) ①상인회는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얻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市場)의 경우, 시장(市場)안의 전체 상인을 상인회 구성대상으로 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인정시장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구역안에서 50개 이상의 점포(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한다)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연결되어야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구성한다.
 3. 법 제2조제1호나목 및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상가 또는 복합형 상가 건물인 인정시장의 경우 건물배치가 격리되지 아니하고 직렬 또는 정방형으로 연결되는 구역안에서 50개이상의 점포를 갖추고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가. 4동이상의 상가건물로서 동별 점포수가 50개이상인 경우, 그 1동 또는 건물전체의 점포를 합산한 상인으로 구성한다.
 - 나. 4동이상의 상가건물로서 동별 점포수가 50개미만인 경우, 그 어느 동을 합산하여 50개이상의 점포를 이루는 건물안의 전체 상인으로 구성한다.
 - 다. 나목의 규정은 건물 1개동안의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 모두가 다른 건물동과 합산할 수 있으나, 그 건물안의 상인들이 부분적으로 나

누어 다른 건물동과 합산할 수 없다.

제36조(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8조제 6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 및 신고)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설립한 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한 사항중 상인회 명칭·대표자·소재지·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市長)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등록의 철회 등) ①시장(市長)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철회하여야 한다.

1. 상인이 아닌 사람을 상인회 이사 또는 회장으로 선출한 경우
2. 특정종교의 교리전파 또는 정치적인 활동을 위주로 운영하는 경우
3. 인정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한 경우 및 기타 개별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 등의 사유로 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이 소멸된 때

②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市長)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예산의 지원 등) ①상인회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40조제5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사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기본자산(부동산을 말한다) 평가액 한도이내로 한다.

④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상인회가 보조사업 수행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서류 비치 등) ①상인회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총회 회의록
5.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공사완료 후 정산된 시점부터 기산한다.

제41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사업비 지출 등 회계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재산의 처분제한 등) ①상인회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재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에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3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市場) 관할구역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추진실적
3. 매회계년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제6장 보 칙

제44조(준용) ①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사천시 주차장 조례」·「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규칙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④보조사업 수행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이전에 보조금을 교부한 무등록시장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받고 제10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이 조례 시행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는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을 추진 중인 법인 및 번영회 등은 조례 공포일로부터 3월이내에 상인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개선사업 및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별 또는 인접지역시장을 연계한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거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및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사업의 활성화)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상표·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등에 관한 사업

2.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배송체계의 구축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경영교육 및 전문가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장상인업종전환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의 제공
2.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상담

제16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 각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①시·도지사는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및 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의 입점우선권부여 또는 임대료할인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22조(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이하 같다)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28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접시행 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하거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또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5호 (생략)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현황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주택공사로 하여금 시장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의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말한다)되어 매장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상점가진홍조합에 관한 특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상점가진홍조합(이하 “상점가진홍조합”이라 한다)이 시장 안의 상

인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점가진흥조합은 상인회로 본다.

제44조(보고) ① (생략)

②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자금·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시장활성화사업 지원자금의 집행내역 등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현대화사업을 실시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
2.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상인, 시장, 법인, 단체,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을 대표하는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주택공사를 대표하는 자
4. 시장정비사업조합,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및 연합회를 각 대표하는 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이라 함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것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 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

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 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5조(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 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장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제9조(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선정대상)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는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 및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한 시장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시장을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다 (생략)

라.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유통산업의 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장정비사

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인정시장으로서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서류
4.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계획서(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수립한 것을 말한다)
 - 가.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
 - 나. 시장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조달 방안
 - 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시장정비사업조합
4.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제11조(시장정비사업계획의 검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성

이 있는 지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 가능 여부

4.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육성계획과의 일치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구역의 변경)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시장정비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제22조(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등)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인접지역의 범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지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시장과 연접하여 노점 또는 상가건물이 형성되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정비사업의 추진이 곤란한 지역
2. 시장에 속하는 건물과 맞벽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진동 또는 붕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위험한 건물 지역
3.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 확보가 그 지역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곤란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초의 시장에 한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접지역 건축물 또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0조(시행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 이 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 (생략)

⑥상인회의 규약(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 (생략)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⑩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고)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말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시장 및 상인회의 현황
2. 전년도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
3. 전년도 사업시행구역 선정·진행 현황 및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

②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40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4.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지원자금 사용내역 및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이행 실적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第35條 (財産處分の 제한) 補助事業者는 補助金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效用이 增加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財産은 당해 補助事業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없이 補助金の 交付目的에 違背되는 用途에 사용하거나, 讓渡·交換 또는 貸與하거나 擔保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법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業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第12條 (契約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國家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を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契約保證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保證金の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상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契約保證金を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保證金の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입찰보증금)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총입찰예정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

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법·정보통신공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기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로 하여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0조 (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삭제 <1999.9.9>

⑤삭제 <1999.9.9>

⑥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급자가 아니면 당해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⑦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⑨삭제 <1998.2.2>

⑩제37조제4항의 규정은 제6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기타의 법령에 의하여 행정간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⑤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⑥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